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137600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0. 20.(피고 A에 대하여) 2022. 11. 24.(피고 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5,895,438원과 그 중 35,224,294원에 대하여 2021. 9. 2.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3. 31. 접수 제5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2)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가정불화로 수년 전부터 별거하였고, 201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오가다가 2021. 3.경 피고 A가 향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 및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B은 2021. 11. 17.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2635호로 피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해 2022. 1. 27.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낸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1. 4. 21.이고, 피고 B은 그 이전부터 장기간 피고 A와 별거 중이어서 피고 A의 채무관계 내지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B에 대한 사해의사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협의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후 2022. 1.경 실제로 이혼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협의를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피고 B에게 과대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205.6㎡ 중 23.1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41.9㎡
3. 대전광역시 대덕구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5.64㎡

2층 49.89㎡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5.5㎡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1.44㎡

-- 이 상 --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 가. 원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각 신용보증약정상 채권자입니다.
- 나.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입니다.

2.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 (1)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15. 05. 04.	2016. 05. 04.	15,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0. 04. 23.	2021. 04. 20.	20,000,000원
합 계 금			35,000,000원

- (2) 그리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자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 (1)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대출기관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약정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대출기관	보증번호	보증원금
제1약정	제1보증	15. 05. 04.	16. 05. 04.	E은행	F	15,000,000 원
제2약정	제2보증	20. 04. 23.	21. 04. 20.	G은행	H	20,000,000 원
합 계 금						35,000,000 원

발행하였습니다.

- (2) 그 후 피고 A는 위 제1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21. 4. 29.로 조건변경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 A의 대출 실행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정	보증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2015. 05. 04.	E은행	일반자금	15,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20. 04. 23.	G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20,000,000원
합 계 금					35,000,000원

라.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 (1) 피고 A는 2021. 4. 21.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각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액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	보증	변제일	변제기관	변제금
제1약정	제1보증	2021. 09. 02.	E은행	15,053,271원
제2약정	제2보증		G은행	20,171,023원
합 계 금				35,224,294원

-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부대비용

- (1) 대지급금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으로 49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송달료 환급액 20,306원을 충당하여 현재 대지급잔액금으로 478,094원이 남아 있습니다.

- (2) 추가보증료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미납한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193,050원(제1약정 97,600원 + 제2약정 95,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각 대위변제일인 2021. 9. 2.부터 현재까지 연 10%입니다.

사. 소 결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35,895,438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15,053,271원 + 대지급잔액금 478,094원 + 추가보증료 97,600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20,171,023원 + 추가보증료 95,450원) 및 그 중 35,224,294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15,053,271원 + 제2

약정 대위변제금 20,171,0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